

전기사업법중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배전사업 및 전기판매사업”을 “배전사업·전기판매사업 및 구역전기사업”로 하고, 동조제2호중 “배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를 “배전사업자·전기판매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로 하며, 동조에 제10호의2 및 제10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구역전기사업”이라 함은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발전설비를 갖추고 특정한 공급구역의 수요에 응하여 전기를 생산하여 전력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당해 공급구역안의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10의3. “구역전기사업자”라 함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역전기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7조제4항중 “사업구역별료”를 “사업구역 및 특정한 공급구역별료”로 하고, 동조제5항제3호중 “배전사업에 있어서는”을 “배전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에 있어서는”으로, “배전사업자의 사업구역중”을 “배전사업자의 사업구역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의 특정한 공급구역중”으로 하며, 동조동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구역전기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특정한 공급구역의 전력수요의 50퍼센트 이상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공급능력을 갖추고, 그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의 전기사용자에 대한 다른 전기사업자의 전기공급에 차질이 없을 것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구역전기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의 전력거래) ①구역전기사업자는 사고 그 밖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전력이 부족하거나 남는 경우에는 부족한 전력 또는 남는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할 수 있다.

②전기판매사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거래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전기판매사업자는 제1항의 거래에 따른 전기요금 그 밖의 거래조건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약관(이하 “보완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제16조제2항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에 이를 준용한다.

제19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구역전기사업자(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구역전기사업자에 대한 준용) 제14조 내지 제17조 및 제20조제1항의 규정은 구역전기사업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7조중 “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를 “송전사업자·배전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중 “전기판매사업자”를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구역전기사업자”로 하고, 동조동항제3호중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를 “전기판매사업자·구역전기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로 한다.

제31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구역전기사업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특정한 공급구역의 수요에 부족하거나 남는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제34조중 “전기판매사업자”를 “전기판매사업자,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을 구매하는 구역전기사업자”로 한다.

제39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구역전기사업자

제56조제1항제5호중 “제16조의 규정에”를 “제16조 및 제16조의2의 규정에”로, “기본공급약관의”를 “기본공급약관 및 보완공급약관의”로 하고, 동조동항에

부 칙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구역전기사업자의 기본공급약관의 인가에 관한 사항

제66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제1항·제2항, 제4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은 구역전기사업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기판매사업자”는 “구역전기사업자”로 본다.

제9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2조의2(집단에너지사업자의 전기공급에 대한 특례) ①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허가를 받은 집단에너지사업자중 30만킬로와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발전설비용량을 갖춘 자는 이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공급구역 안에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집단에너지사업자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구역전기사업자로 본다.

제96조의2제1항중 “안전공사 및 전기판매사업자로”를 “안전공사, 전기판매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로”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집단에너지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2004년 2월 25일 전에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허가를 받은 집단에너지사업자가 허가받은 공급구역 안에서 전기를 공급하고 있거나 공급예정중인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그 사업자를 이 법에 의한 구역전기사업자로 본다.

②제1항의 집단에너지사업자는 이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전일까지는 당해 공급구역안에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제3조(공급약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허가를 받은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규정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공급약관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전기사업”이라 함은 발전사업·송전사업·<u>배전사업 및 전기판매사업</u>을 말한다.</p> <p>2. “전기사업자”라 함은 발전사업자·송전사업자·<u>배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u>를 말한다.</p> <p>3. ~ 10. (생략) <신설></p>	<p>제2조(정의) ----- -----.</p> <p>1. -----<u>배전사업·전기판매 사업 및 구역전기사업</u>을-----.</p> <p>2. -----<u>·배전사업자·전기판매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u>를-----.</p> <p>3.~10.(현행과같음)</p> <p>10의2. “<u>구역전기사업</u>”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발전설비를 갖추고 특정한공급구역의 수요에 응하여 전기를 생산하여 전력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당해 공급구역안의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함을 주된 목적으로하는사업을 말한다.</p>